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6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상정된 안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 2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 2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 2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 2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	2
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2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2
11.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2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2
.....	2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2
.....	2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3

---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맡게 된 임오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은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8)
  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2)
  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1)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5)
  9.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7)
  10.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11.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0)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10시05분)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광고산업 진흥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가능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접수행위가 모집행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는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모집·접수라는 개념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뜻에…… 뉘앙스가 상당히 차이가 나면 모집과 접수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집은 권유하는 행위고 접수는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주는 행위인데, 모집이라는 조항만 있어도 접수까지 되는 걸로 늘 해석을 해 왔는데 그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접수를 명시하는……

○정연욱 위원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됩니까? 모집·접수라는 게 말씀 취지는 제가 십분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우리가 뉘앙스 차이를 떠나서 여러 가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이나 접수하는 과정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문구만 바꾼다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걸 없애자는 취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접수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 잘 써서 정산하는 것 까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취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영수증을 바로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없으십니까?

제가 이 법을 봤을 때, 모집 하나로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좀 더 투명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접수'라는 자구를 하나 더 넣으면 더 확실하게 투명성에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2,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논의하다 도서관계 및 지역 주민의 반대로 철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역도서관 발전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3,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설립·운영 사항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 설립·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12쪽입니다.

4,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계속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 시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기 만료 후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17쪽입니다.

5,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시 출판사 신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제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22쪽입니다.

6,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업무 위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26쪽입니다.

7, 보호감호소 및 치료감호소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도서관의 정의에서 폐지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변경된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31쪽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2페이지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논의하다 철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기엔 광역대표도서관은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 하고 반대를 하니까 그 자체에서 재정 부담 같은 걸 감수하고 철회한 사례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법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광역단체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한다는 건 지금 이것 반대됐을 때 반대 말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민간위탁은 안 되고요, 위원님. 반드시 광역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다만 지정을, 예컨대 경기도에 도서관이 A도서관, B도서관 광역이 지은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지정해서 그걸 대표도서관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빼는 게 조금 수긍이 덜 가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도서관이 도서관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수입하고 지출하는 게 잘 맞지 않고 법인화하거나 민간으로 넘겼을 경우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안정적이지 않은 면이 있고 실제로도 민간……

○**조은희 위원** 법적으로 광역시·도 단체가 꼭 해야만 한다고 지금 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김에 다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예, 이게 지금 도서관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조은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예.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해서 따로 정하는데 그동안은 못 했습니까? 이게 꼭 따로 정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문도서관하고 특수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정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텐데 이 규정이 없어 가지고 여기 위임 규정을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동안 없어서 불편한 점이 뭐였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쪽에 보시면 신설로 해서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그 옆의 비고에 보시면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인적 기준은 어떻고, 예컨대 사서는 몇 명 이상이고 의료 분야 전문도서관이면 그 전문도서관에 필요한 어떤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야 시행규칙으로 또 위임이 되고 그래 가지고 계속 위임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없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조은희 위원** 그동안에 뭐가 어려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현재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이 없어서 설립이나 이런 게 불 가능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법적으로 기준 같은 걸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저희가 법적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다는 취지에서……

○**조은희 위원** 저는 입법 과다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잘해 왔는데 이걸 꼭……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정의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다른 도서관들은 어쨌든 시행령에 넘기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만 없었기 때문에 이 2개의 유형만 새로 추가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은희 위원** 다른 도서관은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다 있는데 여기 2개 도서관만 없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았다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실제로 예측 가능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이현승 의원님 법안인가요? '개인 및 단체'를 '출판업체 또는'으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

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단체고 왜 개인을 빼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1인 사업자들이 많아서 개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에 개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개인을 뺀 이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ISBN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개인은 지금도 시행규칙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법적인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출판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체는 그대로 놔두고 개인이 삭제됐는데 개인 또한 1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건데 ‘단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셔서, 그러면 단체에 그 개인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건지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건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과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에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실 법인격 자체를 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경우에는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현재 시행령·시책규칙하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도 충분히 ISB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굳이 남겨 놓을 필요가 없겠다, 실제로 출판산업에 관계되는 출판업자로 명확하게 바꿔 놓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법 취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안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개인 및 단체로 충분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또 출판업체가 빠지면 안 되기도, 고유번호를 위해서 출판업체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을 굳이 빼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현실적으로 개인이 ISBN을 발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한. 그래서 개인이라는 걸 뺀다 그 맥락이고 출판 같은 경우는 ISBN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충분히 이해했는데 요즘 개인사업자가, 개인 1인 사업자가 많아지니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개인은 여기 단체에 포함을 시켜 주는 건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여기에 ‘출판업체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출판업체에 개인사업자도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계원 위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지……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전문도서관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공공도서관 중에 광역대표도서관을 반드시 시도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직접……

○**조은희 위원**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 통과하는 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역문화정책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됐어요, 이념 철학의 문제인데.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거냐고요.

○**양문석 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정된 광역대표도서관 1개만 직접 운영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서,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대로 열려 있는데 지정된 광역대표도서관 1개만 직접 운영해라는 부분들은 그 도시의 기본적인 상징성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전체 주민과의 친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조계원 위원** 아니, 좀 더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머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얼마든지 자유로운, 광역에서 지정하는……

○**조은희 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그 말씀 취지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만약 광주시라고 그러면 광주시에서 도서관 어디를 대표도서관으로 하거나 이것을……

○**조계원 위원** 시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시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대표도서관 지정하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야만 합니까?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광역도서관이 있으면 운영하고 싶은 것은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광역도서관이 아니라 여러 도서관 중에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것……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법안으로 이렇게 하냐고요. 서울시면……

○**조계원 위원** 아니, 거기에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조계원 위원**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지정한 대표도서관만큼은 시에서,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대표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7개 시도는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 모두 시도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24년도에 일어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24년도 경기도 첫 도립도서관으로 경기도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도서관 업계의 거센 반발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10월에 개관 예정인 경기도도서관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을 개정해 놓게 되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더 투명성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반드시 직접 운영……

전국 전체 도서관 2만 2000개 중에 광역을 대표하는 17개는 직접 운영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불안정……

○소위원장 임오경 24년도 경기도에서 도립도서관 첫 사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소위원장 임오경 이것 새로운 시도를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다 전체적으로……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더, 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자체장을 해 본 입장에서 하라 마라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법으로 공공이 운영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첫 사례로 작년에 도립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민간위탁 운영 자체가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좀……

○조계원 위원 주민들이 반대……

○소위원장 임오경 이게 도서관 업계와 주민들의 반발이……

○조은희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쪽에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법으로 정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시나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강요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첫 사례였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업계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만 별도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할 수 없으니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자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17개 광역대표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실제 단체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도 단체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잘 수렴을 하셨나요? 법안은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왔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전체가 다 의견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저희가 입법 전에 다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조은희 위원** 저는 그 우려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현행법 제66조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하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이나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와 별도로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게시 등이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본편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대상 온라인비디오물의 경우 그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통을 도모한다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은 해당 플랫폼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나 광고·선전물은 그러한 제한 없이 공공장소나 정보통신망 등에서 공공연하게 배포·게시될 수 있다는 점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자체 확인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하여 강유정 의원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 확인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직권으로 이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김승수 의원안은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 이전에 자체 확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가 있어야 유해성 확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김승수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차이가 뭐예요?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차이가 김승수 의원님은 영등위에 결과를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광고·선전물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했으면 이건 청소년 유해물이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강유정 의원님 안은 그냥 자체 분류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해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3쪽입니다.

3, 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에 대한 처벌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통보가 있어야 유해성 확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김승수 의원안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유정 의원이 얘기한 것, 필요시 직권으로 이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규정에 같이 포함해서 대안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 저희 안에는 시정공고를 넣어서 직권으로 취소하기 전에 이 시정 한번 공고하고 그다음에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안에.

○조계원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연욱 위원 이게 사전 통보를 해서 권한남용 방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사전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기간 같은 게 실제로 어찌 됩니까? 실제로 광고 심의나 이런 부분들의 기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은데, 물량이 많아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처음에는 하루 정도였다가 이게 점점 광고물이 많아지니까……

○정연욱 위원 지금 어느 정도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3일, 1.8일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7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면 광

고·선전물도 같이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허용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러니까 자체등급분류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하면 그게 너무 지체가 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정부 측에 한말씀드릴게요.

영화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OTT는 자체등급분류를 하게 만든 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OTT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자체등급분류로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OTT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드라마는 계속해서 영등위 직접 심의를 거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OTT는 모든 것을 자체 심의로 지금 다 풀어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광고·선전물까지도……

저도 이 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형평성 논란이 너무나 큰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그건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위원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게임에서도 자체등급분류를 하고 있고 영상에서 영화 쪽은 온라인비디오물, 즉 OTT에 대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영화가 만들어지면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 영화에 대해서 자체등급분류를 할 것이냐…… 제작사가 할 것이냐, 투자·배급사가 할 것이냐, 상영관이 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일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OTT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그러면 지금 영화 관련 돼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의견을 주셔야지, 영화도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가 간소화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위원 참 신박한 논거예요. 플랫폼 여부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 나는 이런 논리를 처음 들어 봤어.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빠르게 제작자는 투자자는 상영관이든, 안 그러면 그들이 다 참가하는 협의체든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유무에 따라서 규제에 차별이 있다라는 이런 신박한 논거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문제는 고루 평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가려고 하면 오히려 정부가 그 3주체의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3주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위원장님하고 양문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자율심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영화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율심의기구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막 떠오른 생각이니까 한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에 대한 지원은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펀드라든지 제작 지원이라든지 공동제작 지원이라든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 특단의 대책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특단의 대책인데요, 어쨌든 규제의 일관성…… 작은 데서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논의의 시작을 하여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13쪽에요, 저는 취지에는 동의해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을 낮춘다고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이게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좀 낮추자는 기조에 따라서 낮추려고 하는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제한상영가라는 건 청소년 불가도 넘어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제한상영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 준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한상영가는 3년 이하 징역이라 해도 걸리는 건 없는데 그냥 문구상으로 좀 낮춰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한상영가 사례가 아주 간혹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제한상영가 상영관은 없습니다, 국내에. 그런 제도가 있을 뿐이지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일단 청소년 보호법도 지금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 통일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정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건 의원입법이 아니고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조은희 위원 정부안인데, 저는 여기 보면서 정부가 참 형식적으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효과 여부는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2년 징역, 2000만 원 돼 있으니까 그냥 기준을 동일화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기준을 맞추는 의미입니다.

○조은희 위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의문인 거지요, 제한상영가에 대해서. 별로 소용없는 걸 그냥 기준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입법을 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이해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은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 등에 관련돼서 이러한 유사한 법안들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일괄 개정 사항으로……

○소위원장 임오경 예, 그래서 법안을 그렇게 통일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걸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찾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예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문체부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그리고 ‘수어통역을 반드시’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수정의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국가비상사태 등’을 앞에 붙이는 걸로.

사유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취지가 계엄 선포를 할 때, 담화문 발표할 때 옆에 수화통역이 없었다, 이런 것 할 때는 진짜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에서 벌써 수화통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자구를 넣어서 이걸 명시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KTV의

계엄 발표를 키사로 직접 발표하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있는 법안에 구체적으로 이 자구를 또 넣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 현행 법령으로는 국가 주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중요 정책을 영으로 넘겼는데 영에는 재난법하고 감염법 그 2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담화를 발표하시거나 특별한 정부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여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게 돼 있다면 그걸 더 강화해서 말하는 걸로 하면 되지 굳이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감염법, 재난법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이걸 수화통역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사항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넓혀 보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국가비상사태 등을 넣은 취지는 알겠는데 어찌 됐든 국가 주요 사항이 빠져 있는 부분이면 조금 더 문구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비상사태 등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협소화되거나 특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래서 이 ‘등’ 자를 넣어서 주요 사업 해서 조금 더 넓히는 겁니다, 앞에는 사례를 좀 들고요.

○손솔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상에서, 위임하는 데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넣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시행령도 여기서 좀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난법하고 감염법하고 결정하는 사항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고산업 진흥법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5쪽입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광고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진흥법을 마련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계적·일관적으로 법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광고산업에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법에 포함적인 진흥 근거를 두고 있고 광고매체 및 분야별로 방송법, 옥외광고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표시광고법, 정부광고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은 광고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방송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디지털광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옥외광고는 행정안전부, 식품 등의 광고는 식약처, 광고 내용 및 표시 관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광고업계에서 체계적인 광고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개정안을 통해 통합적으로 광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고산업에서 방송통신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에 대해서는 소관 법률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여 방송통신광고 관련 진흥정책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낮고 부처 간의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방송통신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문체부 소관의 신문·잡지 광고에 대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광고산업진흥법, 양문석 의원안은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으로 제명에서 차이가 있는데 제정안의 제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과 구성체계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각 법안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포괄적·추상적 규정보다는 광고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대부분이며 통상적인 산업진흥법의 구성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문체부는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정의)에서 “‘광고주’란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문체부도 수정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광고주’란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를 시행하는 주체를 말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4조 (광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제6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해서 문체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제8조(표준화 지원)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10조(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제13조(광고의 공적 책임)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제15조(광고사업자 등의 책임)과 관련해서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정수용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동법 제6조를 위배하여’라고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6조(광고의 자율심의 등)과 관련해서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수정수용인데요. 27쪽에 보시면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과 제3항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및 광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광고의 표시기준)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28쪽, 광고산업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정수용인데 삭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제14조(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미디어광고’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여 수범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디어광고’를 ‘광고’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제15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관해서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으며 문체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미디어광고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미디어광고를 ‘광고’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해서 문체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제16조제1항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광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수정수용 의견입니다.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문체부 수정 요구를 오늘 처음 봐요, 우리는. 곳곳에 지금 문체부가 수정을 요구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던 사항, 그래서 수정 요구안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단일안으로 재수정안을 내는 게 합리적이겠다 해서 오늘은 이 논의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한번 들어 보시고요.

○**양문석 위원** 지금 수정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정돈과 일관성을 더 정비해서 내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입니다.

○**조은희 위원** 양문석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발의자시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가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잘 못 봤었는데 궁금한 거를 여쭐게요.

5페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신문·잡지 광고를 하고 다른 방송통신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다 이런 게 교통 정리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지금 정부조직법상 광고는 문체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옥외 광고나 각자 소관의 광고를 진흥하도록 되어 있으니 정부조직법상 광고를 총괄하고 있는 문체부가 기본법식으로 이 광고진흥법을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문체부는 신문·잡지 광고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전체 광고를 다 합니다. 신문·잡지 광고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과기정통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 간 조율이 안 됐는데 문체부는 이걸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법사위 같은데 올라가면 당연히 타 부처 의견이 강하게 나올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도 적시한 게 아니고 방송 광고는 이렇게 되고 옥외 광고는 행안부로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그 부분은 거기서 진통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총론적인 광고진통법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걸 소관 부처를 어떻게 두느냐 가지고 또 부처 간에 알력이 벌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 주신 법안에는 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존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는 광고산업 전반에 대해서만 진통하도록 그렇게……

○조은희 위원 그게 말이 되나?

○양문석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의 조율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그거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게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실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로 갈 수도 있는 그 부분들은 과기정통부하고 얼마만큼 조율하느냐의 영역인데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정부 간의 조율과 그다음에 부처 간의 조율 그다음에 상임위 간의 조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은희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약간 시간을, 다음 법안심사소위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물 있잖아요. 옥외 광고물은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행안부의 지휘도 받고 그다음에 문체부의 지휘도 받아야 되나요? 제가 그걸 확실히 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이 법의 취지는 옥외 광고에 대한 규제나 감독은 행안부의 법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옥외 광고를 포함한 다른 모든 광고들에 대해서……

○조계원 위원 진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기술개발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진통을 하겠다 그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게 굉장히 모호하니까 조정이 잘돼야 된다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이 법안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20조인지 30조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 데이터 자체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 광고를 100조를 하고 있는지 150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광고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조차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IT, BT 이렇게 이야기할 때 IT라는 실질적인 미디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동안에 광고 제도가 전혀 뒷받침 못 하고 있고 광고 제도가 뒷받침 못 하고 있으니까 콘텐츠산업 진흥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기초 데이터조차도 없는 게 현재 광고 현실이라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포괄하는 현재의 법 속에서는 광고는 문화부가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에 명실상부한 이러한 전체 통합권들을 주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 옥외 광고 그다음에 IT 광고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재조정하는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재구조화가 이 기본법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법안의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또 수정안을 하신다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하겠지만요.

21대 때 김승수 의원님이 법안을 한 차례 냈는데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상임위 간에도 논의를 했는데 그때도 방통위와 문체부가 조율을 못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 위원장도 동의하신다 하고 이런 국회의 노력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법안을 다시, 언제 다시 내신다고 하셔도 정부가 이거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정리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방통위의 입장은 광고시장 70% 이상을 방통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기들 먹거리니까 안 놔주겠다 하는데 문체부가 우리가 다 할게라고 하면 어떻게 조율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할게가 아니고 광고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총괄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통계도 부족하고 인력도 그렇고 기술개발도 그렇고 해외 진출도 그렇고 이게 워낙 좀 체계적이지 않으니……

○**배현진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이거를 실집행하셔야 될 분들이 부처 간 격벽 두고서는 우리 밥그릇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효율적으로 잘 좀 상의를 해 주시기를 22대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이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광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 규정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보 광고 관련돼서 과기부하고 방통위하고 문체부하고 올여름 뜨겁게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판매가 지금 나뉘져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부처 간에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고산업이 제대로 규제에 맞지 않게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좀 통합 절차가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부처 간에 논의를 통해서……

저도 지금 오늘 수정·보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부처 간에 논란이 좀 많은 법안인데 문체부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정보 광고를 절대로 우리가 또 과기부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문체부가 요청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니까 부처 간에 좀 논의를 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에서 올바른 법안으로 좀 상향시켜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원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수정·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보완을 한다라고 사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사일정 10항이 다 됐고요.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차관님,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산 수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수리업체, 관리업체 등의 민원 행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손해배상책임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 및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며 보험 등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직접 참여하여 목공, 석공 등 국가유산 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므로 이들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은 보험·공제 가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오경 의원안처럼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적용례에 관해서는 국가유산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 계상은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 없이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실제로 보험·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 부분 안전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 추정 가능하십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저희가 추정을 해 봤는데요 현재 50억 원 정도, 전체 사업자를 봤을 때 지금 5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사업자들이 그런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취지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업자의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연 55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보험 가입액은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느 정도 이것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다 보시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나름대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어찌 보면 비용 부담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찌 됐든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연욱 위원** 이의 제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외 부담이 늘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또 이행 과정에서 약간의 부실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업체나 이런 부분도 다 공유가 되는 거지요? 어떤 보험이나 업체 선정은 그냥 자의적으로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어떤 공정한 룰이나 기준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행 시기를 1년으로 잡았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공제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제보험 상품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욱 위원** 아직 상품이 없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공제조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것이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상품이 없다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공제조합에서 갖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또 알리고 하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린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부칙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6개월로 하겠다는 겁니까, 1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임오경 의원님 안에 공포 후 1년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을 수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진짜 비용 부담, 가입 부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래 주시기를 저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관람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김승수 의원 원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차장님, 관리 주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개보수, 보수·정비를 저희가 직접 관리

하는 그런, 경복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보수·정비를 하고요. 지자체에 위임된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정비 예산을 지자체에 70%를 지원해서 7 대 3 비율로 해서 지자체가 보수·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7을 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배현진 손솔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정연숙 조계원 조은희

○**청가 위원(1인)**

박수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문화정책관 이정미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문화유산국장 이종희